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2129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212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74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22. 5. 26.

판결선고 2022. 6. 1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74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은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D의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들을 토대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박정운, 판사 권성우